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9호로 2023년 8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되고 2023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 등 신설(안 제4조)
- 나. 안전관리시설의 설치(안 제5조)
- 다. 신고체계의 마련(안 제6조)
- 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안 제10조)
- 마.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안 제15조)
- 바.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시설 지정 및 설치내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3)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가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3. 8. 31. ~ 9.20.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되고 2023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항만법」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의 시설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무를 강화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 내부에서 불법촬영장치 등의 설치가 의심될 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안전점검장비의 대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였음.

○ 검토결과

- 기존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었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2021.7.20.)·시행(2023.7.21.)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 ⑦ (생략)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생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 ⑤ (생략)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생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9호로 2023년 8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3조)

나. 위험수목에 대한 지원계획, 지원대상지(안 제4조~제5조)

다. 위험수목 처리지원, 실태조사, 지원신청 등(안 제6조~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8. 31.~9. 20./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고 8개의 본칙 조문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및 소유자등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지로 주택·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규정하되,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원 제외 대상지로는 산림 및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처리지원 수목으로 가슴높이지름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또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으로 명시하면서도 제3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및 수목전문가에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와 태풍 등으로 쓰러짐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